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12. 21.
개정 2020. 10. 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1조의4(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성) ① 국내현장실습은 2개의 과정으로 편성하며, 각 과정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편성내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10.17., 2018.12.27., 2019.10.16., 2020.06.18., 2020.10.05.)

1. 단기 현장실습 :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4주 이상 8주 이하 국내현장실습수업, 정규학기 교과목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 인턴십 프로그램과 학과(부) 개설 전공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2. 장기 현장실습 : 학기 중 15주 이상 국내현장실습수업, 정규학기 교과목(e-러닝강좌 제외)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 매 학년도 2학기에만 개설한다.

② 해외현장실습은 2개의 과정으로 편성하며, 각 과정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편성내역은 별표2와 같다.

1. 단기 해외현장실습 : 방학 중 4주 이상 8주 이하 해외현장실습수업, 계절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다.
2. 장기 해외현장실습 : 학기 중 15주 이상 해외현장실습수업, 정규학기 교과목(e-러닝강좌 제외)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 매 학년도 2학기에만 개설한다.

③ 국고지원사업에 의한 특정 사업단의 현장실습은 해당 사업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제3조(이수) ① 이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은 학칙 제31조에 의거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국내 및 해외현장실습을 합하여 최대 3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 각 과정별로 이수할 수 있는 현장실습의 횟수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단기 국내 현장실습(교양 및 전공) : 2회 이내, 최대 9학점까지 이수 가능
2. 장기 국내 현장실습 : 1회 12학점 이수 가능
3. 해외현장실습 : 장·단기 구분 없이 1회로 한정되며 최대 12학점까지 이수 가능

③ 현장실습을 이수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실습기관의 동의와 인재개발원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기관 및 과정을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기간의 5분의 4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2. 징병검사, 징·소집에 응하는 경우(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잔여기간의 실습이 어려운 경우

⑤ 실습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된 후 실습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보고서 또는 세미나 등으로 대체하여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현장실습의 개설) ① 현장실습은 학과(부)의 건의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 학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학장이 현장실습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현장실습 개설 신청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센터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개설내역을 학사운영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5)
1. 개설과정 및 학점수
2. 현장실습의 목적과 내용
3. 현장실습기간 및 실습시간
4. 현장실습신청서 접수기간
5. 현장실습수업 (출장)지도 교수
6. 현장실습기관 및 기관 담당자
7. 기타 개설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장체험연수 등의 현장실습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신청자격) ① 국내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단기 국내 현장실습 : 재학생으로 현장실습 이수기간에 3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개정 2018.12.27)
2. 장기 국내 현장실습 : 재학생으로 7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졸업예정학기 해당자는 졸업사정 전까지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4.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해외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단기 해외현장실습 : 재학생으로 현장실습 이수기간에 4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장기 해외현장실습 : 재학생으로 7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해당 해외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 등의 수학요건을 갖춘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6조(신청 및 선발절차) ①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소정기간 내에 현장실습(인턴십) 참가신청서를 소속 학부(과) 또는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학부(과)장은 본교 및 현장실습기관의 선발기준에 의거 실습분야와 실습여건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친 후 현장실습생을 선발하여 센터에 통보한다.

③ 해외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해 해외현장실습 신청을 받은 후 인재개발원장은 본교 및 해외현장실습기관의 선발기준에 의거 실습분야와 실습여건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친 후 현장실습생을 선발한다.

제7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현장실습 과목은 정규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개설 단기 국내·외 현장실습교과목은 이수자에 한해 학점인정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명단을 학사운영팀에 통보하여 일괄 수강신청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9.06.25)

③ 센터개설 장기 국내·외 현장실습교과목은 선발자에 한해 해당 명단을 학사운영팀에 통보하여 일괄 수강신청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9.06.25)

④ 전공개설 단기 국내 현장실습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강신청 처리한다.
1. 정규 학기 중 현장실습 이수 과목)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수강신청 하되 수강정원은 3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16)
2.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현장실습 이수 과목 : 이수자에 한해 학점인정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명단을 학사운영팀에 통보하여 일괄 수강신청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9.06.25)

⑤ 수강신청은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확정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발 및 수강신청을 취소한다.

제8조(실습생 지도) ① 소속 학부(과)장・지도교수 및 현장실습업무 담당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장기 현장실습은 2회 이상, 단기 현장실습은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실습생의 작

업환경,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고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실습생의 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현장실습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제9조(현장실습 평가방법) ① 전공개설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부(과)에서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현장실습근무일지, 결과보고서, 현장실습기관의 현장실습평가서 등을 취합하여 이수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 개설 국내·외 장·단기 현장실습 교과목은 센터에서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현장실습 근무일지, 결과보고서, 현장실습기관의 현장실습평가서 등을 취합하여 이수 여부를 평가한다.

제10조(학점인정) ①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이수구분은 교양선택 및 전공선택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의 성적인정은 이수 P(Pass), 미이수 N(NON-Pass)로 평가하고, 센터에서는 이수 결과를 학사운영팀에 통보한다. (개정 2019.06.25)

③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사운영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1조(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2.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체. 단 장기 현장실습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 10인 이상 사업체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4. 학교기업,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5.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제12조(협약사항) 현장실습기관과의 협약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근무)계획
2. 현장실습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실습생에 대한 수혜 조건(후생복지 및 실습지원비 등)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실습생의 의무) ① 실습생은 현장실습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근무일지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본교 학칙, 현장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본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실습의 의무위반자 조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현장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5조(기타) ①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기관에 현장실습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전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자에게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지침 및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④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등 관련 규정과 현장실습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부 칙(기획예산부-542,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학생현장실습규정 및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이수가능 학점에 포함된다.

부 칙(기획예산팀-529, 2018.10.17)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획예산팀-625, 2018.12.27)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획예산팀-521, 2019.10.16)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획예산팀-413, 2020.06.18)
이 규정은 2020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획예산팀-638, 2020.10.05.)
이 규정은 2020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내현장실습 편성내역 (개정 2018.10.17., 2018.12.27., 2019.10.16., 2020.06.18., 2020.10.05.)

교과목명	개설주체	이수구분	이수기간	인정학점	실습기간	비고
인턴십프로그램Ⅰ	현장실습 지원센터	교양선택	하계 및 동계방학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 하계방학 이수 -하계 계절학기 성적처리 • 동계방학 이수 -동계 계절학기 성적처리
인턴십프로그램Ⅱ				6학점	8주 320시간 이상	
인턴십프로그램Ⅲ			2학기 중	12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문화콘텐츠학과 인턴십Ⅰ	문화콘텐츠 학과	전공선택	하계 및 동계방학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문화콘텐츠학과 인턴십Ⅱ				6학점	8주 320시간 이상	
호텔·컨벤션 인턴십Ⅰ	호텔컨벤션 학과	전공선택	하계 및 동계방학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호텔·컨벤션 인턴십Ⅱ				6학점	8주 320시간 이상	
소득세인턴십실습	회계학과	전공선택	1학기 중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1학기 성적처리
관광경영 단기현장실습	관광경영학과	전공선택	하계방학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하계 계절학기 성적처리
동물생명공학 현장실습	동물생명 공학과	전공선택	하계방학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창의적설계를 위한 현장실습	식품영양학과	전공선택	하계방학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영어학과 인턴십프로그램	영어학과	전공선택	2학기 중	12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2학기 성적처리
무역장기현장실습	무역학과	전공선택	2학기 중	12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언론영상인턴십 프로그램	미디어영상 광고학부 언론영상전공	전공선택	2학기 중	12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광고홍보인턴십 프로그램	미디어영상 광고학부 광고홍보전공	전공선택	2학기 중	12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문화콘텐츠 현장실습	문화콘텐츠 학과	전공선택	2학기 중	12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장기회계전공 현장실습	회계학과	전공선택	2학기 중	12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경제장기현장실습	경제학과	전공선택	2학기 중	12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IT인턴십프로그램	컴퓨터 공학과	전공선택	2학기 중	12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식품영양현장실습	식품영양 학과	전공선택	2학기 중	12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보건의료기관 현장실습	의료경영 학과	전공선택	2학기 중	12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제약공학현장실습	제약공학과	전공선택	2학기 중	12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신에너지·자원 현장실습	신에너지·자원 공학과	전공선택	2학기 중	12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뷰티인턴십 프로그램	뷰티디자인 학과	전공선택	2학기 중	12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별표2] 해외현장실습 편성내역 (개정 2018.12.27.)

교과목명	개설주체	이수구분	이수기간	인정학점	실습기간	비고
해외인턴십 프로그램Ⅰ	현장실습 지원센터	교양선택	하계 및 동계방학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동계방학 이수 -동계 계절학기 성적처리
해외인턴십 프로그램Ⅱ				6학점	8주 320시간 이상	•하계방학 이수 -하계 계절학기 성적처리
해외인턴십 프로그램Ⅲ			2학기 중	12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2학기 성적처리